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공고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

1. 사업 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매출감소 일반 업종 위기 극복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① ' 21. 7. 7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 ②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소 사업체

구 분	해 당 업 종	지원금
집합금지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콜라텍·무도장·홀덤편(홀덤편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여행사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50만원

*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 (소 재)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9. 30. 이전
 - * 이·미용업의 경우, 개업일이 '21. 7. 27 이전
 - *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영업일이 60일 이상일 것
- (영업여부) '21. 7. 7.~' 21. 10.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포함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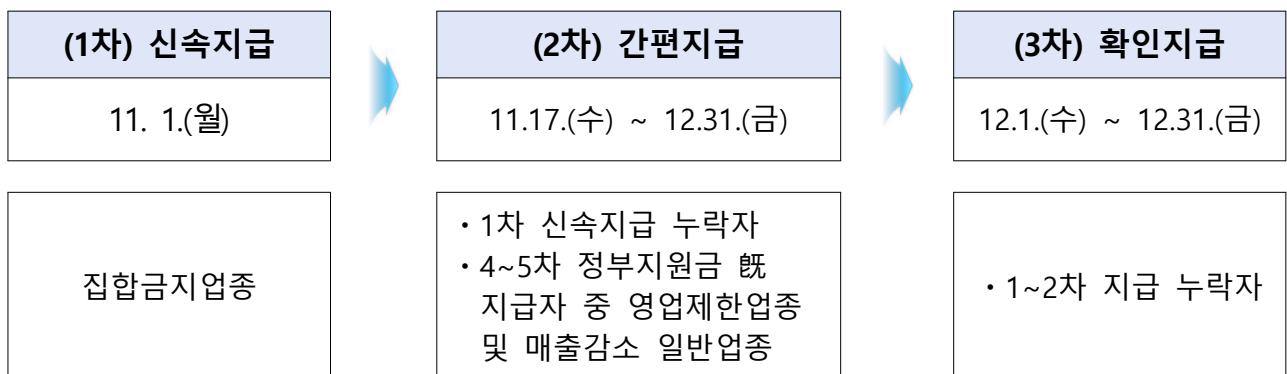
□ (제외대상)

-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3.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



① 1차 신속지급 : 11. 1.(월)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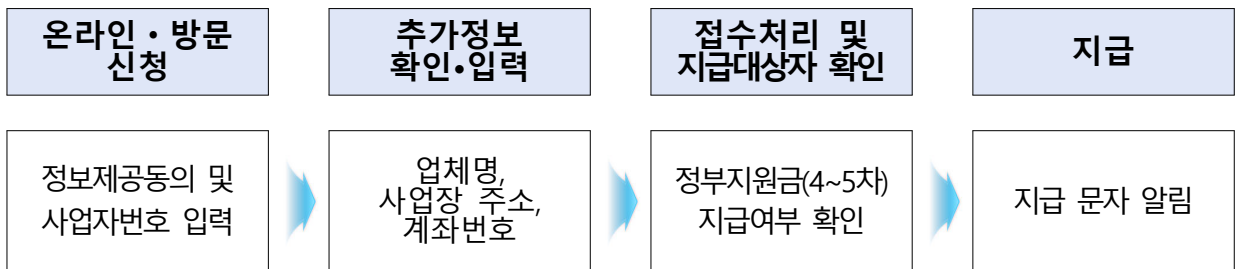
- (대상) 집합금지업종
 - * 대전시 집합금지 업종 중 지급자료 기 확보 사업체
- (절차) 입금 안내문자발송(11.1) → 계좌입금(11.1)
 - * 1차 신속지급 누락자는, 2차 간편지급 신청

② 2차 간편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 1차 지급누락자
 ■ 영업제한업종
 ■ 일반업종

- (대상) ①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사업체 중 문자안내 통보 받은 자
 ② 집합금지업종 중 1차 신속지급 누락자
 - * 정부 4~5차 지원금 지급대상로 확인된 사업체
- (절차) 지급대상 안내문자 발송(11.17) → 온라인신청 (11.17) → 중기부 지급대상 여부확인 → 지급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방법)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지급 예정

③ 3차 확인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1~2차 지급
누락자**

- (대상) 1~2차 지급 누락자
- (절차) 증빙서류 제출 확인지급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금지 및 제한업종),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매출감소 일반업종)*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 (방법)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 (주점 · 음식관련) 영업신고증
 - (학원 · 교습소) 학원(교습소)설립 · 운영등록증
 - (독서실) 독서실 설립 · 운영등록증
 - (이·미용) 영업신고증
 -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 놀이공원(유원시설) 영업신고 등록증

② 매출감소 일반 업종

- (연매출 판단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구간 평균을 연매출 환산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 (연매출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분기(월)매출 비교 선택시) ①-③ 모두 제출, 국세청(홈택스) 자료만 인정
 -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일반업종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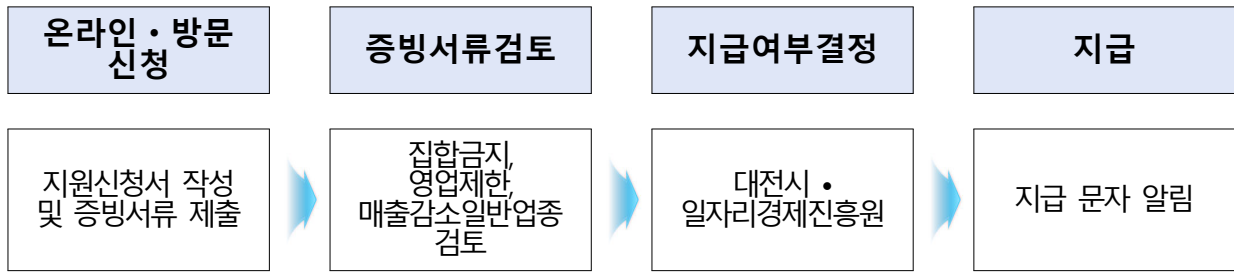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비교 적용 항목								
	'19.연 '20.연	'19.상 '20.상	'19.상 '21.상	'19.하 '20.상	'19.하 '20.하	'20.상 '20.하	'20.상 '21.하	'20.하 '21.상	'21.상 '21.하
18년 이전	○	○	○	○	○	○	○	○	월 평균 매출액 비교
19년 상반기	○	○	○	○	○	○	○	○	
19년 하반기	-	-	-	-	-	○	○	○	
20년 상반기	-	-	-	-	-	-	○	○	
20년 하반기	-	-	-	-	-	-	-	○	
21년 이후	-	-	-	-	-	-	-	-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연매출
	기준	비교	
21년1월~5월말	21년 2월~6월 월평균 매출액	21년 7월~10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구간 연매출 환산
21년6월~8월말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	'21년 10월~11월 월평균 매출액	
21년9월	'21년 10월 매출액	'21년 11월 매출액	

* 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예 : 21.5월 중 개업 사업체는 6월 매출부터 적용)

○ (지원절차)



※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예정

4. 2차~3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방문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5. 이의신청

- (일정) ' 21. 12. 1. ~ ' 22. 1. 14. / 접수 마감 2주 후 종료
- (대상) 부지급 통보받은 대상자
-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 (절차)



6.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7.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 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지원대상 업종

집합금지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콜라텍·무도장·홀덤편(홀덤편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매출감소	여행사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신청 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연락처(HP)		
	사업장 주소	대전광역시 구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p>본인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이하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청한 입금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할 수 없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등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p>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청 및 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이 불가능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	--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신청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연락처 :

대전광역시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방문인에게 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금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업종별 추가서류(공고문 참고)	수수료 없음
------	--	-----------